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동행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동행

1.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동행(고도재해장해보장형-월 납)
-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동행(고도재해장해보장형-일시납)
- 무배당 변액연금보험 동행(사망보장형-월 납)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종신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더블케어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까지
	투자실적연금형	연금지급 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보험가입시점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연금형, 기본보증지급기간, 조기집중배수 3배)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연금지급 개시 전에 다른 연금유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연금지급 개시나이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고도재해장해 보장형-월납)	5년납	0세 ~ 80세	(가입나이+10세)~90세
	7년납	0세 ~ 80세	(가입나이+10세)~90세
	10년납	0세 ~ 79세	(가입나이+11세)~90세
	12년납	0세 ~ 77세	(가입나이+13세)~90세
	15년납	0세 ~ 74세	(가입나이+16세)~90세
	20년납	0세 ~ 69세	(가입나이+21세)~90세
	25년납	0세 ~ 64세	(가입나이+26세)~90세
	30년납	0세 ~ 59세	(가입나이+31세)~90세
	40년납	0세 ~ 49세	(가입나이+41세)~90세
	50년납	0세 ~ 39세	(가입나이+51세)~90세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연금지급 개시나이
(고도재해장해 보장형-일시납)	일시납	0세 ~ 80세	(가입나이+5세)~90세
(사망보장형 -월납)	5년납	만15세 ~ 75세	(가입나이+10세)~90세
	7년납	만15세 ~ 75세	(가입나이+10세)~90세
	10년납	만15세 ~ 75세	(가입나이+11세)~90세
	12년납	만15세 ~ 75세	(가입나이+13세)~90세
	15년납	만15세 ~ 74세	(가입나이+16세)~90세
	20년납	만15세 ~ 69세	(가입나이+21세)~90세
	25년납	만15세 ~ 64세	(가입나이+26세)~90세
	30년납	만15세 ~ 59세	(가입나이+31세)~90세
	40년납	만15세 ~ 49세	(가입나이+41세)~90세
	50년납	만15세 ~ 39세	(가입나이+51세)~90세

※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더블케어연금형의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70세를 최대한도로 합니다.

※ 납입기간 별 최소거치기간(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기간)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월납	5년납	5년
	7년납	3년
	10년납 이상	1년
일시납	일시납	5년

· 월납의 경우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등으로 납입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납입기간을 따릅니다.

다.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료 납입주기
고도재해장해보장형-월납	월 납
고도재해장해보장형-일시납	일시납
사망보장형-월납	월 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 (1) 월 납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납입기간 별 최소 기본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기간	최소보험료
5년납	50만원
7년납	30만원
10년납 이상	10만원

- (2) 일시납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이며, 납입 한도는 최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1)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 개시나이 - 2개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3) 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 (4)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하는 기본보험료 및 정기추가납입보험료 외에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로서 최소 납입보험료는 1만원입니다.
- (5)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월 납】

- ①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는 총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납입총액(기본보험료 × 12 × 납입기간)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추가납입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② 및 ③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기본보험료(기본보험료×12)의 20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⑥ ⑤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②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시납】

- ① 계약자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 총액(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일시납보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200%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경과년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매 1년이 지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② 및 ③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입 후 경과년수별로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는 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⑥ ⑤에 따라 추가로 납입된 보험료는 ②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요약>

구 분		납입한도
월납	총납입한도	(기본보험료 x 납입기간(년) x 12) x 200%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x 경과월수 + 선납보험료) x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일시납	총납입한도	일시납보험료의 200%
	연간납입한도	일시납보험료의 20%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월 납】

가. 보험료의 선납은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월납보험료를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다. “나”의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7호 제2목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이 아닌 “선납 신청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합니다. 선납 신청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은 계약 체결시점과 달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시납】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월 납】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할 때에 계약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의 연체가 없는 계약은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 시는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과 연체된 기본보험료(단,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보험료 납입의 연체가 없는 계약은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보험료 제외,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합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일시납】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할 때에 계약자는 청약한 날까지의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금액에 「9. 연체이율에 관한 사

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해지계약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은 「계약이 해지된 날」(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 시는 「해지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과 미공제된 월공제금액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이하 “연체 보험료”라 합니다.)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특약보험료 제외,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합한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부활(효력회복)시점의 계약자적립액으로 합니다.

라. “다”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활(효력회복)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 연체된 보험료 완납일
- (2) 연체보험료 완납 후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승낙일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합니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생활자금인출 서비스”의 인출 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연 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인출금액은 인출 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2개월분의 월공제액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마. 『중도인출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바. ‘가’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상속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할 때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출 후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가’ 항, “생활자금인출 서비스”, “노후행복자금”의 인출 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가’ 항 및 “생활자금인출서비스”에 따라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였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저조하여 회사가 계약자적립액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월공제액 및 특별계정운용보수를 더 이상 차감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투자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제외)의 연금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단,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헛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합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1)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보험료수입

- 2)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합니다.
- 3) 가중치는 0.5% 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합니다.
- 4)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5)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 6) 「직전년도 보험료수입」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합니다.

(2)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2)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합니다.
- 4) 국고채 가중치(β1), 회사채 가중치(β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함.

(3) 운용자산이익률

1)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2)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begin{aligned} \text{운용자산수익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 \text{투자지출율} &= \frac{(2 \times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times 100}{[\text{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 \text{전월말 현재 운용자산} \\ &\quad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수익} - \text{직전 12개월간 투자영업비용})]} \end{aligned}$$

3)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4)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투자리스크 전체를 부담하는 자산이 존재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관련 투자영업수익은 재보험계약을 출재한 보험회사가 아닌 이를 인수한 보험회사의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에 포함한다.

라. '가'항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항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합니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7%로 합니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관련 회사내부지침을 따릅니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제외)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보험계약대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부족한 경우에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고,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액으로 적립합니다.

라. 계약자는 “가” 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금액(다만, 가산이율(회사가 정하는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은 제외)은 보험계약대출적립액에서 제외하고, 상환일부터 제2영업일동안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시 펀드별 분배금액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또한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마. 회사는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바.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13.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월 납】

가. 보험료 납입유예(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유예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유예 신청 가능 시점
5년납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7년납	보험계약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
10년납 이상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2) 제(1)호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기간은 연장됩니다. 납입유예 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신청횟수에 관계없이 총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총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유예의 중지를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월공제액을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의 일부라도 총당할 수 없을 경우에 보험료 납입유

에는 중단됩니다.

-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당시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이 2개월분의 월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6) 회사는 총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36개월에 도달하였을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 (7)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인하여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다음의 최소 거치기간보다 적게 되는 경우, 연금지급 개시나이도 「(가입나이 + 연장된 납입기간 + 최소 거치기간)세」로 자동 연장됩니다.

※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 거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5년납	5년
7년납	3년
10년납 이상	1년

- (8) 제(7)호에 따라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연금지급 개시나이가 회사가 허용한 최대 연금지급 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납입 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일시납】

납입 보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14. 월공제액에 관한 사항

【월 납】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나. 보험료 납입유예 기간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기간 중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 및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기간 후)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일시납】

계약의 체결 및 유지, 위험보장 및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을 위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차월도 이후 15차월도 까지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16차월도 이후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5.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6.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가 납입한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나. “가” 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공제액으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그 공제된 특약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

다.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감액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egin{array}{c} \text{감액후} \\ \text{이미 납입한} \\ \text{기본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c} \text{감액전} \\ \text{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c} \text{감액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 \text{계약자적립액} \end{array}}{\begin{array}{c} \text{감액전 기본보험료에 의한} \\ \text{계약자적립액} \end{array}}$$

라. 계약자적립액을 중도인출한 경우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begin{array}{c} \text{인출후} \\ \text{이미 납입한} \\ \text{기본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c} \text{인출전} \\ \text{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c} \text{인출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 \text{계약자적립액} \end{array}}{\begin{array}{c} \text{인출전 기본보험료에 의한} \\ \text{계약자적립액} \end{array}}$$

$$\begin{array}{c} \text{인출후} \\ \text{이미 납입한} \\ \text{추가납입보험료} \end{array} = \begin{array}{c} \text{인출전} \\ \text{이미 납입한} \\ \text{추가납입보험료} \end{array} \times \frac{\begin{array}{c} \text{인출후 추가납입보험료에} \\ \text{의한 계약자적립액} \end{array}}{\begin{array}{c} \text{인출전 추가납입보험료에} \\ \text{의한 계약자적립액} \end{array}}$$

17.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변액보험의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하 “펀드” 라 합니다)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액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2)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 (3)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4)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합니다.

나. 펀드의 유형 및 수

- (1)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합니다.

- ① 채권형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② 가치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③ 성장주식형 2호 : 우량주식[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종목 중 시장평균 이상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다만,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으로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후순위채를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 ④ 미국주식형 3호 :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표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달러표시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달러표시 우량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금융기관의 달러표시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글로벌주식형 2호 : 해외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⑥ 인덱스주식형 2호 : KOSPI200 인덱스의 투자성과를 추종하기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

종목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금융기관의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⑦ 아시아주식형 2호 : 아시아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유럽주식형 : 유럽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⑨ 글로벌채권형 : 해외 각국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자산유동화증권(ABS)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⑩ 브릭스주식형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국공채와 우량회사채[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4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⑪ 골드투자형 : 금 상품 가격 추종을 위해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예치, 단기대출 등 유동성 자산(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을 포함)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ETF에 투자할 경우 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⑫ 글로벌 고배당 주식형 : 전세계 고배당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ETF)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ETF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⑬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형 :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채권,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⑭ 글로벌 멀티인컴 : 전세계 고배당 주식, 채권 및 대안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⑮ MMF형: 단기채권, 콜론(CALL LOAN),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예금 등 단기 유동성 금융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⑯ 배당주식형 2호 : 우량주식(거래소 및 코스닥 종목, 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70%이상을 투자하고,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고배당을 지급하는 종목과 기업의 펀더멘탈(배당, 이익, 매출 등)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국공채와, 우량 회사채 [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A-등급 이상으로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합니다]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30% 이내로 투자하는 펀드

- ⑰ 안정 포트폴리오형 : 저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⑱ 중립 포트폴리오형 : 중립적인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⑲ 적극 포트폴리오형 :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고객 성향에 알맞은 자산배분을 통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커머더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⑳ 달러단기채권형 : 미국 달러화(USD)로 발행된 국채, 회사채 등 단기 달러 표시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MMF 및 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㉑ 미국채권형 :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표시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미국 외 발행자 포함)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 및 달러화(USD)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㉓ 글로벌 IT 섹터 : 전세계 IT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IT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㉔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 제약, 생명과학, 의료장비, 헬스케어 서비스 등 전세계 헬스케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㉕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 통신, 인터넷,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 전세계 커뮤니케이션서비스 관련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 (ETF 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섹터의 투자성과를 추종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㉖ 중국주식형 : 중국 본토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㉗ 글로벌 ESG 주식형 :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Environment), S(Social), G(Governance)요소가 유명한 산업을 비롯하여 ESG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여 이익 창출을 추구하는 펀드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㉘ 글로벌AI자산배분 : 펀드 운용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

리즘을 활용하는 펀드로,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별 투자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펀드. 동 펀드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국내외 채권형 집합투자증권(ETF포함), 기타 대체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등에 순자산(NAV)의 60%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함.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에는 별도의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1)에서 운용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4) (1)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특별계정 운용보수에 관한 사항

(1) 펀드 종류별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 특별계정적립액)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 계	
					매년(ε)	매일
채권형	0.34%	0.10%	0.02%	0.02%	0.48%	0.0013150685%
성장주식형 2호	0.69%	0.21%	0.02%	0.02%	0.94%	0.0025753425%
가치주식형 2호	0.69%	0.23%	0.02%	0.02%	0.96%	0.0026301370%
미국주식형 3호	0.69%	0.05%	0.04%	0.02%	0.80%	0.0021917808%
글로벌주식형 2호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인덱스주식형 2호	0.69%	0.20%	0.02%	0.02%	0.93%	0.0025479452%
아시아주식형 2호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유럽주식형	0.40%	0.05%	0.04%	0.02%	0.51%	0.0013972603%
글로벌채권형	0.25%	0.05%	0.04%	0.02%	0.36%	0.0009863014%
브릭스주식형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골드투자형	0.30%	0.05%	0.04%	0.02%	0.41%	0.0011232877%
글로벌 고배당주식형	0.50%	0.10%	0.04%	0.02%	0.66%	0.0018082192%
글로벌 하이일드채권형	0.50%	0.08%	0.04%	0.02%	0.64%	0.0017534247%
글로벌멀티인컴	0.50%	0.05%	0.04%	0.02%	0.61%	0.0016712329%
MMF형	0.15%	0.01%	0.02%	0.02%	0.20%	0.0005479452%
배당주식형 2호	0.69%	0.30%	0.02%	0.02%	1.03%	0.0028219178%
안정 포트폴리오형	0.41%	0.05%	0.04%	0.02%	0.52%	0.0014246575%

펀드명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계	
					매년(%)	매일
중립 포트폴리오형	0.47%	0.05%	0.04%	0.02%	0.58%	0.0015890411%
적극 포트폴리오형	0.52%	0.05%	0.04%	0.02%	0.63%	0.0017260274%
달러단기채권형	0.15%	0.05%	0.04%	0.02%	0.26%	0.0007123288%
미국채권형	0.25%	0.05%	0.04%	0.02%	0.36%	0.0009863014%
글로벌 IT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글로벌 헬스케어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글로벌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섹터	0.45%	0.05%	0.04%	0.02%	0.56%	0.0015342466%
중국주식형	0.45%	0.02%	0.04%	0.02%	0.53%	0.0014520548%
글로벌 ESG 주식형	0.53%	0.05%	0.04%	0.02%	0.64%	0.0017534247%
글로벌시자산배분	0.69%	0.10%	0.04%	0.02%	0.85%	0.0023287671%

(2)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1)의 표에서 정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라.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2) (1)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마.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text{특별계정의 총 좌수}}$$

※ 당일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3) 자금이체시 기준가격

- ① 자금을 이체할 때 적용하는 각 펀드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②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이체사

유가 발생한 날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a)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적립액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b)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다만, 계약자의 임의해지는 제외)
 - (c)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 (d) 펀드자동재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e) 펀드수익자동이전을 실행하는 경우
 - (f) 라이프싸이클 펀드배분을 실행하는 경우
 - (g) 평균분할투자 옵션의 실행으로 최초 MMF형 펀드 투입 이후 MMF형 펀드에서 계약자가 정한 다른 펀드로 투입하는 경우
 - (h) 투자실적연금형의 연금액 지급이 있는 경우

바.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특별계정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2) (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 ①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② ①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③ ① 및 ②의 규정에 따른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합니다.

사.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 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아.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③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④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2)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자.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②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③ 특별계정 자산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해당 각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⑤ ①호 내지 ④호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액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1)호 및 (2)호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의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8.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1) 보험료 등의 납입이 있는 경우
다만,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13.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이체합니다.
- (2)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있는 경우
- (3)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처리하는 경우
- (4)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자적립액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2)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 (3) 보험계약대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4)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5) 월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충당하는 경우 (다만, 월공제액의 계산 및 차감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6) 연금지급 개시일이 된 경우(다만, 투자실적연금형은 제외)

- (7) 투자실적연금형의 연금액 지급이 있는 경우
- (8)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하며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합니다.
- (2) (1)호의 규정에 따른 이체시 기준가격 적용일부터 실제 이체하는 날까지 실적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일반계정 주주지분에서 처리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노후행복자금에 관한 사항

- (1) 노후행복자금이란, 연금지급 개시 시점에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의 계약자적립액으로서, 선택된 계약자적립액은 연금으로 개시하지 않고 공시이율로 운용되며, ‘나’ 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노후행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노후행복자금 선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3)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전에 50%범위 내에서 5% 단위로 노후행복자금선택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은 노후행복자금에서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을 공시이율로 연금지급 개시 일로부터 일자 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이 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점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에서 인출 금액을 차감합니다.
- (5) 다만, 투자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행복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의 일부를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생활자금인출 서비스”의 인출 금액 포함)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펀드의 기준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펀드의 공정한 기준가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각 펀드로의 자금 투입 및 인출 등을 개시합니다.

- (1) 현저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펀드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2) 유가증권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펀드 자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펀드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펀드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펀드자산을 매각하여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 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대량의 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 등의 지급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7)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일반보험으로의 전환(「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특칙)

계약자가 이 보험을 변액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일반보험(「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 금액(이하 '대상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②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행복자금 적립액

(2)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월 납】

- ① 계약일부터 10년과 납입기간 중 더 긴 기간이 지난 계약 (Max[10년, 납입기간], 이하 “최소 전환가능시점”이라 합니다) :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 ② ①의 “최소전환가능시점” 이전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계약의 경우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크고, 9,000만원 이상인 계약

【일시납】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전환 신청 당시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3)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사망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4)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6) 「무배당 신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 외화 일반보험으로의 전환(「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 적용에 관한 특칙)

계약자가 이 보험을 원화 변액보험이 아닌 외화 일반보험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외화보험(「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합니다.

(1)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아래 금액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산기준일 및 기준환율은 원화환산 납입서비스특약 및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에 따릅니다.

- ①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 ②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노후행복자금 적립액

(2)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중>

【월 납】

- ① 계약일부터 10년과 납입기간 중 더 긴 기간이 지난 계약 (Max[10년, 납입기간], 이하 “최소 전환가능시점” 이라 합니다) :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 ② ①의 “최소전환가능시점” 이전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계약의 경우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크고, 90,000달러 이상인 계약

【일시납】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계약 중 전환 신청 당시의 주계약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큰 계약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 중>

- 전환 신청 당시의 노후행복자금 적립액이 10,000달러 이상인 계약

- (3)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은 주보험 가입할 때의 기초서류(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연금사망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간병자 관련 위험률은 연금 전환 당시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 (4)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전환 가능나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 연금지급형태 중 장기간병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은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6) 「무배당 달러연금전환특약_(가입시점)」으로 전환할 때 주계약 전체 해약환급금의 일부를 부분

연금전환할 수 있습니다.

바. 이 보험에 부가되는 선택특약은 일반계정에서 운용합니다.

사.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회사는 계약일부터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일반보험으로의 전환 또는 연금지급 개시 후 보험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보험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2) 계약자적립액 변동에 관한 사항
- (3) 납입보험료 누계 및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

아.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특별계정 총좌수
- (2) 특별계정 기준가격
- (3) 특별계정 자산총액
- (4) 특별계정 자산운용 연평균 수익률
- (5) 특별계정 자산구성내역 및 비율
- (6) 특별계정 자산구성비율 변동내역
- (7) 특별계정 운용보수

자. 피보험자 교체에 관한 사항

(1) 피보험자 교체 대상 계약

① “교체 전 피보험자”와 “교체 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교체일에 모두 생존하는 계약으로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제1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

- (1) 7년(84회 납입) 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다만, 일시납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계약이며 5년납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계약)
- (2) 보험료납입면제를 주요 보장으로 하는 특약(이하 “보험료납입면제특약”이라 합니다)을 부가하지 않은 계약(다만, 월납의 경우에만 해당)
- (3) 고도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다만, 사망보장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4) 교체일 당시 “교체 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 나이가 0세(다만, 사망보장형의 경우 만15세) 이상 및 80세 이하인 경우

2.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법인이 아니며 “교체 후 피보험자”가 “교체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경우

3. 다음 (1) ~ (3)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

(1)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법인이며 계약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계약체결 시점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

(2) “교체 전 피보험자”가 퇴직으로 더 이상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이 아닌 경우

(3) “교체 후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인 경우. 이때, “교체 후 피보험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인 경우는 “교체 후 피보험자”는 “교체 전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어야 함.

(2) 피보험자 교체 신청 및 취소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시점 직전 1년 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2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교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교체를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승낙 이후에 (3)호에서 정한 교체일 이전에 “교체 전 피보험자”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호 교체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교체신청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4) 계약자는 피보험자 교체 신청 시점에 “교체 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5) (4)에 따른 “교체 후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나이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교체 후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5세 이상 90세 이내여야 합니다.

②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은 아래 최소 거치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납의 경우에만 해당)

(납입기간 완료 후 연금지급 개시나이까지의 최소 거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최소 거치 기간
5년납	5년
7년납	3년
10년납 이상	1년

납입기간은 보험료 납입유예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종료 등으로 납입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납입기간을 따릅니다.

(6) 계약자는 교체 승낙 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교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일 이후에는 교체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가 교체 후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로 교체 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교체 전 계약으로 환원하여 교체일부터 교체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교체 전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① 회사가 교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② 교체 신청 시 계약자, 교체 전 피보험자, 교체 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교체 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8) 피보험자 교체의 적용

- ① (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가 승낙된 경우 교체일은 교체 신청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로 봅니다. 교체일부터 “교체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교체 후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 ② 교체일 현재 “교체 후 피보험자”의 나이를 새로운 가입나이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 교체 이후 위험보험료 및 연금액은 피보험자 교체일(교체시점)의 위험률 및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④ 부가된 특약은 피보험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 ⑤ (2)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한 계약은 더블케어연금형으로 연금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차. 회사는 상품명칭 앞뒤에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단, 보험대리점의 명칭은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카.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타.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대면채널로 합니다.

하.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사망률의 개정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 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거. '하'항에도 불구하고 “더블케어연금형”의 연금액 산출에 적용하는 “6대질병”, “4대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중증치매상태”, “일상생활장해상태” 및 “고도장해상태”의 발생률은 계약일(가입시점)의 위험률을 적용합니다.

너. 이 상품은 연금개시시점의 최저계약자적립액 보증이 없기 때문에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을 계약할 때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또한, 이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 계약자 안내자료에 이 상품과 관련하여 “저축성”이라는 표현이 있

는 곳에는 다음의 문구를 함께 기술합니다.

“이 상품은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더. “보험료납입면제특약” 부가에 관한 사항

(1) 월납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을 부가할 경우 다른 선택특약은 부가할 수 없습니다.

(3) “보험료납입면제특약” 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선택한 이 보험의 납입기간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관련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 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머. 헬스케어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1) 본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고, 서비스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피보험자 등에 제공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혹은 보험 종목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본 서비스는 회사의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가 집니다.

3) 본 서비스는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향후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